(20) 지방세 지출보고서(2018년도 실적기준)

Ⅰ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현황 개요

1. 비과세·감면 총괄표

(단위: 원, %)

구 분		'18년(결산)
비 과 세 · 감 면 액 (A)		40,230,966,440
	비 과 세	17,847,967,590
	감 면	22,382,998,850
지 방 세 징 수 액 (B)		347,908,060,740
비 과 세 · 감 면 율 (A / A + B)		10.4

2. 기능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분 야		'18년(결산)	비중
총 계		40,230,966,440	100
1	일반공공행정(4)	11,041,710,810	27
2	공공질서 및 안전(3)	198,408,970	0
3	교육(4)	787,084,650	2
4	문화및관광(5)	613,934,420	2
5	국가(1)	4,915,780,310	12
6	기타(2)	2,107,193,820	5
7	환경보호(6)	1,145,150	0
8	사회복지(9)	3,549,098,010	9
9	보건(3)	18,652,330	0
10	농림해양수산(4)	3,861,305,470	10
11	산업·중소기업(6)	2,354,603,330	6
12	수송 및 교통(6)	1,146,059,510	3
13	국토 및 지역개발(3)	9,635,989,660	24

3. 세목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 : 원, %)

분 야			'18년(결산)	비중
총 계			40,230,966,440	100
	보 통 세		39,794,011,750	99
		취 득 세	16,770,353,810	42
		등 록 면 허 세	289,496,250	1
		주 민 세	42,409,550	0
		재 산 세	21,793,089,150	54
		자 동 차 세	898,662,990	2
	목 적 세		436,954,690	1
		지 역 자 원 시 설 세	436,950,570	1
		지 방 교 육 세	4,120	0

4. 비과세·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

(단위 : 원)

감 면 유 형	'17년(결산)	'18년(결산)	증감액
소 계	57,526,161,500	40,230,966,440	-17,295,195,060
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	8,340,556,140	9,367,503,860	1,026,947,720
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	27,465,550	71,956,550	44,491,000
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,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	119,836,890	133,641,320	13,804,430
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	179,168,270	168,515,080	-10,653,190
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	1,156,620,630	1,184,880,340	28,259,710
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	910,375,840	115,213,660	-795,162,180
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	181,768,640	198,408,970	16,640,330
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	1,860,800	1,910,360	49,560
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	185,345,660	4,409,800	-180,935,860
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,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	76,420	0	-76,420
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	1,553,366,380	780,764,490	-772,601,890
종교,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	734,728,350	597,755,160	-136,973,190
신문,통신사업에 대한 감면	0	0	0

감 면 유 형	'17년(결산)	'18년(결산)	증감액
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	8,230,240	15,861,710	7,631,470
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	283,180	317,550	34,370
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	206,660	217,190	10,530
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	13,497,290	927,960	-12,569,330
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	15,380,000	15,880,000	500,000
장애인에 대한 감면	867,513,600	803,810,030	-63,703,570
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	491,495,150	605,233,890	113,738,740
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	25,529,580	82,397,400	56,867,820
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	123,487,340	121,811,140	-1,676,200
주택거래에 대한 감면	4,248,000	4,560,000	312,000
임대주택에 대한 감면	455,993,630	1,852,192,520	1,396,198,890
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	20,446,780	27,074,380	6,627,600
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			
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	52,343,980	36,138,650	-16,205,330
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	66,128,980	18,652,330	-47,476,650
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	1,225,018,170	1,531,782,010	306,763,840
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	8,944,870	250,420	-8,694,450
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	421,036,450	482,276,640	61,240,190
농업법인에 대한 감면	464,618,620	1,032,159,830	567,541,210
임업인에 대한 감면	0	5,610,930	5,610,930
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	13,978,490	14,568,120	589,630
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	3,479,110	2,949,320	-529,790
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	47,014,940	58,362,110	11,347,170
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	355,408,210	240,675,890	-114,732,320
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	1,096,952,060	422,512,230	-674,439,830
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	71,307,020	70,157,970	-1,149,050
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	1,045,549,010	510,727,020	-534,821,990
중소기업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	37,285,580	2,029,990	-35,255,590
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	2,631,310	585,000	-2,046,310
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	341,979,770	888,403,980	546,424,210

감 면 유 형	'17년(결산)	'18년(결산)	증감액
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	3,200,000	3,150,000	-50,000
연구·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	29,276,580	29,942,610	666,030
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	37,890	314,418,370	314,380,480
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	118,880	2,094,800	1,975,920
법인,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	236,685,140	61,887,620	-174,797,520
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	31,230,420	0	-31,230,420
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	403,099,670	541,363,940	138,264,270
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	457,360,990	492,841,010	35,480,020
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	424,852,280	598,368,200	173,515,920
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,등록세 감면	59,356,500	0	-59,356,500
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	2,018,110	1,333,170	-684,940
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	42,263,800	53,517,130	11,253,330
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	211,657,870	66,718,750	-144,939,120
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	0	0	0
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	3,839,860	3,667,440	-172,420
산업단지에 대한 감면	23,568,368,290	9,353,874,750	-14,214,493,540
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	8,120	8,140	20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	317,048,850	211,720,580	-105,328,270
국가에 대한 비과세	7,272,689,650	4,855,928,460	-2,416,761,190
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	0	0	0
국가가 사용하는 공용,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	9,535,550	59,851,850	50,316,300
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	371,969,000	171,468,240	-200,500,760
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	136,356,790	111,899,920	-24,456,870
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	2,991,548,240	1,626,953,160	-1,364,595,080
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	151,879,840	122,061,900	-29,817,940
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	12,148,240	42,411,930	30,263,690
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	2,445,700	2,488,040	42,340
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	101,590,200	16,584,490	-85,005,710
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	9,871,910	8,179,260	-1,692,650
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	4,545,540	5,146,880	601,340

Ⅱ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항목별 세부내역

1. 일반공공행정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일반공공행정		**합 계**	11,041,710,810
1	**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** -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자동차·지방소득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90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 - 지방자치단체가 국방, 경호 및 소방, 환자수송, 청소,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1·2호)	**소 계**	9,367,503,860
		취 득 세	1,049,524,350
		주 민 세	1,550,000
		재 산 세	8,111,870,520
		자 동 차 세	9,841,840
		등 록 면 허 세	19,948,000
		지역자원시설세	174,769,150
2	**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**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②)	**소 계**	71,956,550
		취 득 세	71,956,550
3	**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**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·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소 계	133,641,320
		재 산 세	120,832,320
		지역자원시설세	12,809,000
4	**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** 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방소득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§90①, §90②)	**소 계**	168,515,080
		취 득 세	67,624,290
		재 산 세	88,601,600
		등 록 면 허 세	60,000
		지역자원시설세	12,229,190
5	**사유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비과세** -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3호) -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1호, §145②)	**소 계**	1,184,880,340
		재 산 세	1,184,880,340
6	**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** - 지방공사·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①②) -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,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·재산·등록면허세 감면(5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③) -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(5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④)	**소 계**	115,213,660
		취 득 세	24,858,250
		재 산 세	90,315,210
		등 록 면 허 세	40,200

2. 공공질서 및 안전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공공질서 및 안전		**합 계**	198,408,970
7	**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** - 천재·지변·소실·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레저·주민세·재산·자동차·지방소득·담배소비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④, §92① 1호, §92②, §92③)	**소 계**	198,408,970
		자 동 차 세	198,408,290
		지역자원시설세	680

3. 교육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교 육		**합 계**	787,084,650
8	**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** -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방소득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88 1호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)	**소 계**	4,409,800
		주 민 세	2,950,000
		취 득 세	1,423,800
		등 록 면 허 세	36,000
		지역자원시설세	0
9	**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** -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**소 계**	0
		재 산 세	0
10	**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** -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①, §41②, §41③, §41⑤) -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,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·실습용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입목·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①, §42②, §42⑤) -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⑥) -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(한의과대학,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)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⑦)	**소 계**	780,764,490
		취 득 세	159,726,040
		주 민 세	450,000
		재 산 세	541,281,490
		등 록 면 허 세	15,000
		지역자원시설세	79,291,960
11	**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감면** -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43①, §43②, §43③, §44)	**소 계**	1,910,360
		재 산 세	1,698,910
		지역자원시설세	211,450

4. 문화 및 관광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문화 및 관광		**합 계**	613,934,420
12	**종교·제사단체에 대한 감면** - 종교·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0①, §50②, §50③, §50⑤, §50⑥) -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④)	**소 계**	597,755,160
		취 득 세	110,268,020
		주 민 세	12,100,000
		재 산 세	424,967,700
		등 록 면 허 세	18,000
		지역자원시설세	50,401,440
13	**신문·통신사업에 대한 감면** - 신문·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(재산분 및 종업원분)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1)	**소 계**	0
		주 민 세	0
14	**문화·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** - 정부 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①) - 도서관에 관한 등기·등록에 대해서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②) - 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) - (서울 종로구) 인사동·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- (서울) 공연장에 대한 취득·등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- (경기, 양주) 양주 장흥 문화·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 재산세 감면	**소 계**	15,861,710
		취 득 세	12,856,810
		재 산 세	2,636,720
		지역자원시설세	368,180
15	**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** -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하고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①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②) - 국보,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(조례) - (서울 종로)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	**소 계**	317,550
		재 산 세	317,550

5. 환경보호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환경보호		**합 계**	1,145,150
16	**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** -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,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)	**소 계**	217,190
		재 산 세	217,190
17	**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** - 녹색건축물인증 등급,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물 취득·재산세 5~1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①) -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율 등에 따라 취득세 5~1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②) -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5~1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3①) -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4①)	**소 계**	927,960
		취 득 세	835,350
		재 산 세	92,610

6. 사회복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사회복지		**합 계**	3,549,098,010
18	**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**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(균등분) 비과세(지방세법 §77②)	**소 계**	15,880,000
		주 민 세	15,880,000
19	**장애인에 대한 감면** -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 1~3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·자동차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 - 시각장애(4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조례)	**소 계**	803,810,030
		취 득 세	355,306,970
		자 동 차 세	448,503,060
20	**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** - 사회복지법인, 양로원·보육원·모자원·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,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①, §22②, §22③, §22⑤) -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등록면허세 50%감면, 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4)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⑥)	**소 계**	36,138,650
		취 득 세	5,358,300
		주 민 세	3,900,000
		재 산 세	21,410,340
		등 록 면 허 세	60,000
		지역자원시설세	5,410,01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21	**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** -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9) -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2①, §22의2②)	**소 계**	605,233,890
		취 득 세	520,588,130
		재 산 세	84,645,760
22	**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** -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① 1호) -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① 1호) - 양로시설,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25%, 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① 2호)	**소 계**	82,397,400
		취 득 세	75,775,210
		재 산 세	6,468,610
		지역자원시설세	153,580
23	**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**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①)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면제,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②, §29③) -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,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 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·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(지방세법 §54① 8호)	**소 계**	121,811,140
		취 득 세	49,312,560
		재 산 세	180,890
		자 동 차 세	72,309,730
		지역자원시설세	7,960
24	**주택거래에 대한 감면** - 40㎡이하·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3②) -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의2)	**소 계**	4,560,000
		취 득 세	4,560,00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25	**임대주택에 대한 감면** -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①·③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㎡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④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2①)	**소 계**	1,852,192,520
	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②)(삭제) 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환매기간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③)(삭제) -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·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0.1% 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④)(삭제)	취 득 세	1,498,576,940
	-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⑦) -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2①, §31의2②) -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【재산세액-(담보대출금액*60/100*1/1000)】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의3)	재 산 세	290,127,310
	-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3) - 부동산투자회사(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)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4)	지역자원시설세	63,488,27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26	**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** -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①) -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②) -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(25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③) -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(6억원이하 100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의2)	**소 계**	27,074,380
		재 산 세	17,466,880
		등 록 면 허 세	9,607,500

7. 보건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보 건		**합 계**	18,652,330
27	**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** -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,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경감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①) -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②) -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(종료)·재산세·주민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③)	**소 계**	18,652,330
		재 산 세	18,652,330

8. 농림해양수산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농림해양수산		**합 계**	3,861,305,470
28	**농업인에 대한 감면** - 농업인의 농지·임야,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, 도로·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) -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,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) -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②) - 농업·축산업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 -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(조특법 §106의 2① 1호) - (부산·대구·인천·경기·경남)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%→50%→25% 감면 - (광주 광산) 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- (대전 유성) 대전과학산업단지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- (경남 양산) 구 웅상읍 내 농지 재산세 50% 감면('09년), 25% 감면('10년) - (경남 진주) 초전·장재공업지역 내 자경농지 재산세 분리과세 - (충남 보령)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자경농지 재산세 과세이연 - (경기 광주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경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% 감면	**소 계**	1,531,782,010
		취 득 세	1,531,388,080
		재 산 세	290,430
		등 록 면 허 세	103,500
29	**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** 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①) -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④) - (경기 광주시)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재산세 25% 감면	**소 계**	250,420
		취 득 세	250,42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30	**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** - 농업인·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① 1호) -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① 2호) -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,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·시설물 취득·재산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호) -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2호) -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3호) -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4호) -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5호)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③)	**소 계**	482,276,640
		취 득 세	270,126,600
		재 산 세	212,150,040
31	**농업법인에 대한 감면** - 농업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영농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,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)	**소 계**	1,032,159,830
		취 득 세	982,592,620
		재 산 세	39,912,210
		등 록 면 허 세	9,655,000
32	**임업인에 대한 감면** - 임업인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, 99만㎡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③) - 임업에 대한 주민(종업원·재산)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	**소 계**	5,610,930
		취 득 세	5,610,930
33	**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** - 산림유전자원보호림·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2호)	**소 계**	14,568,120
		재 산 세	14,568,12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34	**어업인에 대한 감면** -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①) -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②) -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, 어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③) - 어업에 대한 주민(종업원·재산)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	**소 계**	2,949,320
		재 산 세	2,948,920
		지역자원시설세	400
35	**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** - 어업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①) -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.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②)	**소 계**	58,362,110
		취 득 세	57,196,060
		재 산 세	246,050
		등 록 면 허 세	920,000
36	**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**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·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감면(75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①1~5)	**소 계**	240,675,890
		등 록 면 허 세	240,675,890
37	**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**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①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% 감면,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②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% 감면,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③·④) - 농업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가 구매·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25%, 재산세 25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의2)	**소 계**	422,512,230
		취 득 세	115,388,420
		재 산 세	307,123,810
38	**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** 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·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㎡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6)	**소 계**	70,157,970
		취 득 세	55,585,110
		재 산 세	14,572,860

9. 산업·중소기업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산업 · 중소기업		**합 계**	2,354,603,330
39	**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** 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조특법 §119②, §120③, §121)(삭제) 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 ①·③) 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,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③ 1·2호) 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·등록면허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②)	**소 계**	510,727,020
		취 득 세	470,838,700
		재 산 세	39,088,320
		등 록 면 허 세	800,000
40	**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** - 중소기업자에게 분양·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9②) -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, 재산세 3년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9③)	**소 계**	2,029,990
		재 산 세	2,029,990
41	**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** -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주민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③·④) - 정부로부터 인·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	**소 계**	3,150,000
		주 민 세	3,150,000
42	**연구·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** -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6①) - 시험분석·연구용 담배,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54① 6·7호) - (광주, 북구·광산구)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	**소 계**	29,942,610
		재 산 세	29,942,61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43	**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**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·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①)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·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·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②)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산업기술단지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③) 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④) - 산업지식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2) - (인천·광주·강원·전남)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 - (광주) 광주디자인센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면제 - (서울·경기)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50% 감면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- (제주)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면제 - (강원·경북 문경)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%, 3년간 재산세 50% 감면 - (대구·경북)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50% 감면 - (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제주·경기평택·강원·충북·전북·경북·경남) 고용창출기업(고용우수)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% 감면	**소 계**	2,094,800
		재 산 세	2,094,800
44	**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** -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,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(조특법 §121의2) (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)	**소 계**	314,418,370
		취 득 세	314,418,37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45	**법인·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** -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·공장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100%, 그다음 3년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9·§80)	**소 계**	61,887,620
		재 산 세	61,550,120
		등 록 면 허 세	337,500
46	**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** -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,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1) - (인천·경기·충남·전북·전남·제주)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- (강원·충북·경북)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 - 알뜰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비율(50%)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판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감면(5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62의2)	**소 계**	0
		취 득 세	0
		재 산 세	0
47	**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** - 자동차·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·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,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①) -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 -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·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②)	**소 계**	541,363,940
		취 득 세	478,899,620
		자 동 차 세	62,464,320
48	**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** -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조특법 §119①2·6·12·15·16·17·19·23·24·25·26·27·29, §120①5·11·15·16·19·20·21·22·23·25, §120⑥2·4·9·10·12·13), 50% 감면(조특법 §119①13·28, §120①12·24)(삭제) - 금융기관의 기업합병·분할등을 위한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⑤ 1,2,4,5,6,7호) -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「한국정책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.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⑦) - 금융기관, 한국자산관리공사, 예금보험공사, 정리금융기관, 농협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3①1·2·3·4호)	**소 계**	585,000
		등 록 면 허 세	585,00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49	**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** -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조특법 §119①3·7·10·11, §120①2·6·9·10, §120⑥7·8)(삭제) -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, 사업의 양·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조특법 §119④, §120⑤)(삭제) -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·등록면허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③ 2~6호, §57의2⑤ 3호, §57의2⑥)	**소 계**	888,403,980
	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·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④) -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,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3②)	취 득 세	888,403,980

10. 수송 및 교통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	수송 및 교통	**합 계**	1,146,059,510
50	**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** - 경형 승용·승합·화물차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7①②)	**소 계**	492,841,010
		취 득 세	492,841,010
51	**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** -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(취득세액 140만원 한도) 및 공제(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)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③) -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(취득세액 140만원 한도) 및 공제(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④)	소 계	598,368,200
		취 득 세	598,368,200
52	**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** -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, 기타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소형승합체 세율 적용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7③) - (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대전·울산)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	**소 계**	1,333,170
		자 동 차 세	1,333,170
53	**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 감면** - 노후자동차를 폐차·양도하고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, 취득세 70% 감면(삭제2010.12.27)	**소 계**	0
		취 득 세	0
54	**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** -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(50%) 및 등록면허세 감면(75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70①) -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취득세 감면(50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70②)(삭제) 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0③)	**소 계**	53,517,130
		취 득 세	53,517,130

11. 국토 및 지역개발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국토 및 지역개발		**합 계**	9,635,989,660
55	**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** -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·수용·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3①)	**소 계**	66,718,750
		취 득 세	66,718,750
56	**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** 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4①) - (제주)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감면(조례)	소 계	0
		취 득 세	0
57	**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** 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0% 감면,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6①·②) - (대구 달성군, 인천 계양구·남동구·서구, 경기 평택시·여주군·동두천시)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	**소 계**	3,667,440
		취 득 세	2,091,080
		재 산 세	1,576,360
58	**산업단지에 대한 감면** -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% 감면,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% 감면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①) 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·조성 후 분양·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②) -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·증축시 취득세 35% 감면, 재산세 5년간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35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③) - 산업단지 내 개축·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(조례) - 농공단지 내 휴·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조례) - (부산, 해운대)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	**소 계**	9,353,874,750
		취 득 세	3,626,354,30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	- (광주 광산구)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 - (대전 유성·대덕구)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- (강원, 동해시)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·증축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	재 산 세	5,727,520,450
59	**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** 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· 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1①②)	**소 계**	8,140
	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.5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1③)	재 산 세	8,140
60	**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** -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①)	**소 계**	211,720,580
	-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②) -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③)	재 산 세	211,720,580

12. 국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국가		**합 계**	4,915,780,310
61	**국가에 대한 비과세** - 국가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방소득세 ·지역자원시설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90, §109①, §145① 1호) - 국가가 국방·경호·경비·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·청소·오물수거와 도로공사, 우편·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)	**소 계**	4,855,928,460
		취 득 세	794,453,840
		주 민 세	1,050,000
		재 산 세	4,005,896,920
		자 동 차 세	27,216,780
		등 록 면 허 세	881,760
		지역자원시설세	26,429,160
62	**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** -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②)	**소 계**	0
		취 득 세	0
63	**국가가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** -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① 2호, §109②, §145②)	**소 계**	59,851,850
		재 산 세	58,599,100
		지역자원시설세	1,252,750

13. 기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기 타		**합 계**	2,107,193,820
64	**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** - 임시 흥행장,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9⑤, §109③ 3호, §109③ 5호, §145②) -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③ 5호, 지방세법 시행령 §137②)	**소 계**	42,411,930
		재 산 세	32,507,740
		지역자원시설세	9,904,190
65	**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** -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③ 1,2,3호) -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⑥)	**소 계**	171,468,240
		취 득 세	171,468,240
66	**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** -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세율특례 (지방세법 §15① 2호)	**소 계**	111,899,920
		취 득 세	111,899,920
67	**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· 감면** -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5① 3,4호) -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·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1호) - 정부가 5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의 개정· 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조특법 §119① 2호, §120① 3호)	**소 계**	1,626,953,160
		취 득 세	1,626,953,160
68	**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** -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① 6호) - 행정구역 변경, 주민등록번호 변경,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·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·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② 4호) -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③) -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②) -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26② 2·4호) -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매년 1월 1일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26② 4호)	**소 계**	122,061,900
		취 득 세	39,168,000
		자 동 차 세	77,491,400
		등 록 면 허 세	5,402,50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 : 원)	
		세 목	'18(결산)
	-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 -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①)		
69	**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** -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①) - 별정우체국에 대한 재산·주민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②·③1호) -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,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③2호)	**소 계**	2,488,040
		재 산 세	2,273,210
		지역자원시설세	214,830
70	**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** -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1호, §87② 1호) -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2호, §87② 2호)	**소 계**	16,584,490
		취 득 세	7,269,700
		재 산 세	9,314,790
71	**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** -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주민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①) -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② 1호) -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② 2호) - (경남)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(추가)	**소 계**	8,179,260
		재 산 세	8,179,260
72	**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** -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92의2)	**소 계**	5,146,880
		주 민 세	1,379,550
		재 산 세	2,310,040
		자 동 차 세	1,094,400
		등 록 면 허 세	350,400
		지 방 교 육 세	4,120
		지역자원시설세	8,370